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삭제 〉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501호)

2024.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총괄 검토의견	2
IV . 개별법에 대한 검토의견	6
1. 경륜·경정법	6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9
3. 관광진흥법	13
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17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1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3
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7
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1
9. 저작권법	3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기헌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9. 2.

다.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륜·경정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Ⅲ. 총괄 검토의견

「행정기본법」은 결격사유를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로 정의하고 있음¹⁾.

결격사유의 규정 목적은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 고도의 전문성 또는 윤리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위험과 손실,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²⁾.

결격사유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형사처벌을 받은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이 있음.

이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이유는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파산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법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재산적 기초가 뒷받침이 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기 위해서임.

1)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2)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2020, p.164

그러나 파산선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그 원인에 따라 당사자의 거래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³⁾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한편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⁴⁾.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는 파산절차 중에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⁵⁾, 직업이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파산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업역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그런데 최근 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파산자를 무능력자에 준하여

3)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5헌가21. <소수의견>: 「사립학교법」 제57조

복잡다기한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파산이라는 경제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무절제한 소비생활이나 모험적인 투자 등 파산선고 미복권자에게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다수 있을 것이나, 자연적 재해 또는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고용불안, 정의(情誼)관계에 기한 불가피한 채무보증, 소비자금융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과잉여신,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 등의 여파로 인하여 이른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파산이 채무자의 부도덕 또는 불성실을 징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립학교 교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원인 여하에 따라 국민의 교직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그렇다면 입법자로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경우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사유로 할 것이 아니라,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파산의 원인별 유형을 한정하거나, 파산선고후 일정한 기한 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는 등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거나, (중략) 별도의 제도로써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시켜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4)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24(p.366)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로 규정함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달리 파산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동 개정안은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돕고 차별적 취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자격에 대한 파산자의 결격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산자에 대한 획일적인 결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인 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결격사유는 한편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성·윤리성·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공공의 위험과 손실,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파산자를 자격 등의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의 특수성, 사회적 책임, 신뢰관계 등과 파산제도의 취지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각 사안별로 그 타당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정비 대상 법률([표 1] 참조)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표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격조항 정비 대상 법률

연번	법률	결격사유 정비 대상
1	경륜·경정법(제7조제1항)	○ 경륜·경정 선수 및 심판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	○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3	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 관광사업자 대표 및 임원
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7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 및 종사자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책임자
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 정기간행물 발행인 또는 편집인
9	저작권법(제105조제3항)	○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대리중개업

IV. 개별법에 대한 검토의견

1. 경륜·경정법

안 제1조는 경륜·경정 선수 또는 심판의 등록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7조제1항제1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①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2. 3. (생략) ② ~ ⑤ (생략)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① ----- ----- -----. ----- -----. 1. <u>피성년후견인</u> 2.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경륜·경정 선수 또는 심판의 등록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선수 또는 심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승부조작 등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동법 시행령은 경륜·경륜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그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진흥공단이 선수 및 심판의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개정안은 경륜·경정 선수 또는 심판의 결격사유 중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고하려는 것임.

다만, 경륜·경정 선수 또는 심판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과 경주 시행의 허가를 받은 경주사업자의 직원으로 고용(심판)되거나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선수)로 활동하고 있어 사업 운영의 책임이 있거나 고도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경륜·경정법」상 선수 및 심판은 승자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제25조), 부정청탁 또는 부정행위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제26조 이하) 등 현행법상 부정청탁 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⁷⁾, 선수 및 심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⁸⁾을

6)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6조(선수 및 심판의 자격)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 ①선수 및 심판등록의 유효기간은 각각 그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①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승자투표권”이란 경륜 또는 경정에서 경주 결과를 맞춰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실시하고 있는 등 공정한 경주 시행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파산선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선수 또는 심판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승자투표 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4. 미성년자
5. 제2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제2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8) 공정한 경주 시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선수 및 심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심판) 직원 청렴교육 실시, (선수) 매주 1회 부정행위 방지 교육 실시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안 제2조는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제5조의3제2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 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 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 <u>되지 아니한 사람</u>	<u><삭 제></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재정
 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원회 심의시 부정청탁을 받아 불공정한 심의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는 고도의 지정,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고도 지정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서의 행위 허가 및 보존육성사업·주민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이고(제5조),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는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임(제5조의2).

개정안은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은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경우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⁹⁾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¹⁰⁾하도록 하고 있어 파산자인 위원의 의견만으로 심의가 결정될 수 없는 구조이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원의 불공정한 심의가 우려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피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심의를 방지하고 있으므로¹¹⁾, 개정안과

9) 중앙심의위원회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지역심의위원회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같이 고도보존육성 중앙·지역 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전의 당사자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1

고도보존육성중양심의위원회 운영현황(기준일 : 2024.7월)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최초 구성일) '05. 6. 20.
- (위원회 성격) 국가유산청 소속 '심의기구'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기능)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 (역할)
 - 위원 : 고도의 지정, 고도지구의 지정,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특별보존지구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 전문위원 : 중앙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 전문적 조사·연구업무 수행
- (구성 연혁) 총10회 ('05.6월 / '07.8월 / '09.11월 / '11.11월 / '13.11월 / '15.11월 / '17.11월 / '19.11월 / '21.11월 / '23.11월)

□ 현행 제10기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임기) '23.11.9. ~ '25.11.8.(2년)
- (위원구성) 19명

구분		위원구성 현황
위원 (19명)	중앙부처 (6명)	○ (위원장) 국가유산청장 ○ (부위원장)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 (위원)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광역지자체 (3명)	○ (위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위원(10명)	○ 문화유산 5인, 건축 2인, 도시계획 2인, 문화관광 1인

3. 관광진흥법

안 제3조는 관광사업자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7조제1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범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격사유)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제></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관광사업자 또는 임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사업 등록 또는 신고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제15조)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하고, 관광사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테마파크업,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음¹²⁾.

12)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제4조제1항),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5조제1항), 테마파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제2항),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준비·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함(제6조제1항).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관광사업자는 동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서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와 신고, 지정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안전성, 시설의 청결도, 서비스 품질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점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의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관광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 법인에 대해 관광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다만, 현행 규정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인해 법인 전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보완규정¹³⁾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13)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②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는 관광사업 경영에 적절한 사람으로 볼 수 없고, 관광사업의 경우 호텔업, 유원시설업, 카지노업 등 사업 시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며, 거대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업종이 많고, 파산한 경우라도 면책신청 등 복권을 통해 관광사업자로 등록 및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현행 결격사유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안 제4조는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편집인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9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 8. (생략)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 ⑤ (생략)	제9조(결격사유 등)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뉴스통신사업자는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 보도·논평 등의 전파를 목적으로 송수신을 하거나 간행물을 발행하는 법인이고, 편집인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한 사람으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임¹⁴⁾.

14)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뉴스통신사업자”란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편집인”이란 뉴스통신사업자가 선임(選任)한 사람으로서 뉴스통신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법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와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외에 대한민국 국적과 주소 미보유, 정당의 당원, 동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뉴스의 공정성, 공익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¹⁵⁾).

1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4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3(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경우
2. 대표이사나 편집인이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안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 중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뉴스통신사업은 언론이라는 특성에 따라 뉴스정보를 제작·전파하여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끼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책임과 의무(제4조 및 제5조), 대기업의 소유제한(제7조), 대표이사 및 편집인 등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거나 공표할 의무(제14조) 등이 부여되는 등 두터운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가 뉴스통신업을 운영하거나 편집인이 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공정성·객관성을 상실한 보도로 인해 국민 권익 침해 등의 우려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통신사는 타 언론매체에 가장 원시적 형태의 뉴스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일반 언론보다 높은 공익, 공공성 등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등록요건 또한 타 언론매체에 비해 다소 엄격한 편이므로¹⁶⁾ 뉴스통신사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16) 현행법에도 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한다는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 등록시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까지 확인이 필요함.

참고 2

뉴스통신사 현황(기준일 : 2022.5월)

순번	제호	상호명	대표	편집인	등록일
1	연합뉴스	(주)연합뉴스	성기홍	김경석	1980-12-19
2	뉴시스	(주)뉴시스	김형기	김형기	2001-09-06
3	뉴스웍스	뉴스웍스(주)	고진갑	고진갑	2007-07-26
4	아시아뉴스통신	(주)아시아뉴스 통신	이미내	장창희	2009-02-20
5	PENTA PRESS	(주)펜타프레스	이석용	정은선	2010-06-01
6	KNS뉴스통신	(주)케이엔에스 뉴스통신	장경택	장경택	2011-02-24
7	동양뉴스	(주)동양뉴스통신사	서정훈	서다민	2011-05-19
8	뉴스1코리아	(주)뉴스1	이백규	강호병	2011-05-26
9	NSP통신	(주)엔에스피뉴스 통신사	김정태	류수운	2011-06-29
10	서울뉴스통신	(주)서울뉴스통신	신현성	신현성	2011-12-08
11	국제뉴스	(주)국제뉴스	김영규	김영규	2012-04-02
12	세계뉴스통신	(주)세계뉴스통신	김정희	김정례	2012-12-21
13	내외뉴스통신	(주)내외뉴스통신	김광탁	김광탁	2013-11-19
14	신세계보건복지통신	(주)신세계뉴스통신	김병국	김병국	2014-07-03
15	뉴스21통신	(주)뉴스이십일	김애숙	김애숙	2014-10-14
16	시사통신	시사통신주식회사	권인호	이지은	2014-10-20
17	GNN뉴스통신	(주)세이폴	정대성	정대성	2015-11-04
18	한류엔뉴스통신	(주)한류엔터테인먼트뉴스	박은미	이정숙	2016-06-20
19	KBNSnews	한국방송뉴스 통신사(주)	신유철	김성진	2016-09-22
20	한국공보뉴스 통신	한국뉴스정보 진흥원(주)	조은식	박철진	2016-12-06
21	프레스뉴스	(주)프레스뉴스통신	전강현	전강현	2017-11-09
22	뉴스핍통신	(주)뉴스핍	민병복	박승윤	2018-03-23
23	UPI뉴스통신	(주)더뉴스그룹	김강석	류순열	2018-07-16
24	아시아통신	(주)아시아통신	박대홍	박대홍	2019-02-14
25	한국언론포털 통신사	(주)한국언론포털 통신사	신철례	신유철	2019-05-10
26	열린뉴스통신	(주)와이바에스 뉴스통신	조성원	최지혜	2020-05-19
27	NF통신	(주)뉴스와사람들	안데레사	안데레사	2020-08-31
28	티디아이 뉴스	(주)티디아이뉴스	최영민	최영민	2021-06-16
29	우리뉴스	(주)우리뉴스	송운	송운	2021-08-26
30	Publicnews 뉴스통신	(주)퍼블릭뉴스	윤택완	윤택완	2021-10-12
31	세계시사뉴스통신	(주)세계시사뉴스통신	변재현	변재현	2022-03-31
32	뉴스더원통신	(주)뉴스더원	홍성훈	홍성훈	2022-04-19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안 제5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7조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7조(결격사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¹⁷⁾.

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营业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 예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수를 지급· 관리하는 등¹⁸⁾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은 사실상 대중문화예술인을 훈련·지도·상담하여 육성한 후 제3자에게 이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등 법률적·경제적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법률적 신뢰 관계와 경제적 신용을 요하는 업종으로 결격사유를 해당 직무에 비추어 엄격히 규정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률 개정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 자를 말한다.

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의 경우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계처리)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 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하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각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내용 및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안 제6조는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13제1항제8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 7. (생략)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 ~ ④ (생략)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언론으로서 보도·논평 등을 전파하기 위한 간행물이고,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뉴스 기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공급받아 자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제공·매개하는 서비스임.

현행법은 발행인을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로, 편집인을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기사배열책임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¹⁹⁾.

그리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외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동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정성, 공익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²⁰⁾.

1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과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보도 등을 전파하여 국민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언론은 아니지만 기사배열을 통하여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문사업자 등에게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의무(제6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제9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

2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할 의무(제10조), 발행인 및 편집인 등을 게재 또는 공표할 의무(제21조) 등을 부여하여 두터운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가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책임자가 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공정성 및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기사배열로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신문, 인터넷신문의 발행인·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기사배열책임자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안 제7조는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제7조제1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 ----- -----.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원회 심의시 부정청탁을 받아 불공정한 심의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는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결정,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임(제6조).

현행 제2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임²¹⁾.

개정안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경우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파산자인 위원의 의견만으로 심의가 결정될 수 없는 구조이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원의 불공정한 심의가 우려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피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심의를 방지하고 있으므로²²⁾, 개정안과 같이 역사문화권정비

21) 현행 제2대 위원회 임기 : '23. 7. 1. ~ '25. 6. 30.(2년)

2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② 위원회등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해임 또는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또는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참고 3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현황 (기준일 : 2024.5월)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최초 구성일) '21. 7. 1.
- (위원회 성격) 국가유산청 소속 '심의기구'
- (주요기능) 역사문화권 정책, 제도, 기본계획 등에 관한 심의 등

* 역사문화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현행 제2대 위원회 구성 현황

- (임기) '23. 7. 1. ~ '25. 6. 30.(2년)
- (위원구성) 30명(민간위원 16명, 당연직 14명)

□ 당연직 14명(중앙 5, 광역지자체 9)

중앙부처 고위공무원(5명)	광역지자체 2급·3급(9명)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장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 서울·경기·인천권(경기) ▶ 강원권(강원) ▶ 충북권(충북) ▶ 대전·충남·세종권(충남) ▶ 전북권(전북) ▶ 광주·전남권(전남) ▶ 대구·경북권(경북) ▶ 부산·울산·경남권(경남) ▶ 제주권(제주)

□ 민간위원 16명(문화유산·역사 6, 문화·관광·경관 5, 도시계획·지역개발 5)

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안 제8조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0조제1항제9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0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1. ~ 8. (생략)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②·③ (생략)	제20조(결격사유 등)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정기간행물은 언론으로, 보도·논평 등을 전파하기 위한 간행물 중 신문 외의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기타간행물로 구분하고 있음²³⁾.

2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현행법상 발행인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이고, 편집인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외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기간행물의 공정성, 공익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²⁴⁾.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2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균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제92조·제101조, 「균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제9조제2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정기간행물은 보도 등을 전파하면서 국민의 여론에 영향력이 있으므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의무(제4조), 편집 및 제작에 있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제5조), 발행인 및 편집인 등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하거나 공표할 의무(제19조) 등이 부여되는 등 높은 공적 책임을 요구받는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되거나 편집인이 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공정성·객관성을 상실한 보도 등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기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9. 저작권법

안 제9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제105조 제7항제2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7. (생략) ⑧ ~ ⑫ (생략)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3. ~ 7. (현행과 같음) ⑧ ~ ⑫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음²⁵⁾.

개정안은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수탁받아 관리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용허락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등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바([표 3] 참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가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어려워지고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25) **저작권법 제2조(정의)**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표 3]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유형

구분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대리중개업
정의	○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	○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
진입요건	○ 문체부장관의 허가	○ 문체부장관에게 신고
자격요건	○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결격사유를 제외하고 누구나 가능
법적성격 및 행위능력	○ 신탁법상 신탁 ²⁶⁾ ○ 권리가 신탁관리업자에게 이전 ○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	○ 민법상 대리·중개 ²⁷⁾ ○ 권리가 대리중개업자에게 이전하지 않음 ○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 ○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불가능
수수료	○ 수수료 요율(금액)/사용료 요율(금액)은 문체부 장관 승인 사항	○ 수수료 요율(금액)/사용료 요율(금액)은 자율결정 사항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위탁관리업 운영의 신뢰성, 이용허락·사용료 징수 등 거래의 안정성 확보, 재산상 신뢰관계 형성이 필수적이고,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처분권을

26)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탁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7)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행사하게 되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지속적으로 국회, 언론 등에서 관련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불투명성, 단체 운영 및 업무처리의 부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4

파산절차 개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구분	절 차	내 용
1	파산 신청서 제출 (제294조)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 ※ 채무의 원인, 채무액의 과소 등 무관
2	법원의 심리 및 파산선고 (제305조)	파산선고를 받으면 재산상 법률행위가 금지되며, 개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각종 전문자격사가 될 수 없음
3	면책신청 (제556조)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 법원에 면책신청
4	면책심문 및 면책결정 (제558조, 제564조 및 제566조)	법원은 심문을 통해 성실하나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받은 경우 법원은 면책 취소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 변제책임 면제(조세, 벌금 등 제외)
5	복권 (제574조, 제575조)	① 법원의 <u>면책결정</u> 이 확정되거나, ②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인한 유죄판결 없이 <u>10년이 경과한 경우</u> ③ 면책이 불허된 경우라도 변제 등으로 <u>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u> ⇒ 파산선고에 따른 모든 불이익 소멸